

한국콘텐츠진흥원, 한국엔젤투자협회의  
**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**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'진흥원')과 한국엔젤투자협회(이하 '협회')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 1 조(목적)**

본 협약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콘텐츠 스타트업 금융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조(업무협력)**

본 협약에 따른 업무협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

1. 협회의 엔젤투자마트 프로그램에 진흥원의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참여 기회 제공
2. 양 기관 투자 관련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
3. 우수 콘텐츠 스타트업 및 엔젤투자자 관련 정보 공유
4. 기타 양 기관이 수행하는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교환 등

**제 3조(유효기간)**

본 양해각서는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, 양 기관이 서면으로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 적용한다.

**제 4조(권리·의무의 승계)**

본 양해각서 체결 후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권리의무는 포괄승계 된다.

**제 5조(신의성실의 의무)**

양 기관은 본 협약에 따른 협력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.

**제 6조(기타)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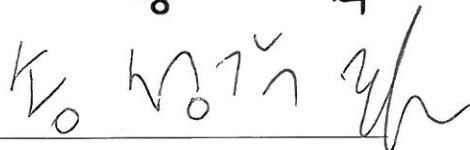
본 양해각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양 기관은 위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년 4월 7일

한 국 콘 텐 츠 진 흥 원

원 장 송 성 각



한 국 엔 젤 투 자 협 회

회 장 고 영 하

